#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21 발의연월일: 2020. 11. 27.

발 의 자:김예지・이종성・윤창현

서정숙 · 김선교 · 김석기

이명수 · 류호정 · 홍석준

최승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보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저상버스 및 휠 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(이하 "저상버스등"이라 함)을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2019년 전국 평균 저상버스등의 도입비율은 26.5%이고 충남의 경우 9.3%에 그치는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등의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있어,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시장·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운행하려는 버스의 대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

하는 비율 이상의 저상버스등 도입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3항 후단 신설).

### 법률 제 호

##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저상버스등의 도입 대수는 전체 운행하려는 버스의 대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)	제14조(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)
①・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·군수가 지방교통약자	3
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	
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	
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	
에는 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	
버스등의 운행을 위한 버스정	
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	
계획을 반영하고, 이에 따라 저	
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.	
<후단 신설>	이 경우 저상버스등의 도입 대
	수는 전체 운행하려는 버스의
	대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
	<u>다.</u>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